건설업 벌칙규정

연재순서

1. 벌칙의 종류와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벌칙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불이익처분 – 이번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불이익처분
4.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상의 벌칙

건설산업 관련 법령수는 무려 80여개에 달하고, 행정처벌 또한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실무자들이 법령상의 벌칙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경영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본지는 설비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위반 기준 및 처벌 내용을 중심으로 연재한다. [편집자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불이익처분

3. 신인도 감정

가. 기획재정부 적격심사기준 중 신인도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 1년 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 · 면허 · 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2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3)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5

항목별	배점한도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2)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2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3) 최근 2년 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7
4)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7
5)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6)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1.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함.
2. 항목별 특성 · 규모 · 내용 · 기간 등의 경중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가능함
3. 환경관련 벌점은 동 처벌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4. 종전 규정에 의하여 받은 감점은 동 감점의 효력이 소멸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5.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동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향후 3년 내에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받은 가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다른 발주기관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 감점을 받은 건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기준에 따른 감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할 수 있다.
6.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음
7. 환산재해율 및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환산재해율 × 0.5 + 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 × 0.3 +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 × 0.2(단, 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8.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과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건축공사에 한해 적용함

나. 조달청 신인도 평가항목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 · 면허 · 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 · 면허 · 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2) 최근 1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제7호, 제10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담합, 뇌물제공자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단, 제재시작일이 본 기준 시행일 전일로 제한	-3점	A : 2년 이상 B : 1년 이상 C : 6월 이상 D : 3월 이상	-3 -2 -1 -0.5
	3) 본 기준 시행일 이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3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점	A : 1년 이상 B : 6월 이상 C : 3월 이상	-3 -2 -1
	4) 국토해양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5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10점미만 C. 10점이상 15점미만 D. 15점이상 20점미만 E. 20점이상	-0.2 -1.0 -2.0 -3.0 -5.0
나. 하도급 관련사항	5) 최근1년간 국토해양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	A. 평점95점이상인 자 B. 평점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C. 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D. 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E. 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3.0 2.0 1.5 1.0 0.5
	6)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3 (-6)	A.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C. 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2) +2 (-4) +1 (-2)
	7) 최근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5.0 -7.0
	8) 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자	-7	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7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나. 하도급 관련사항	9)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A : 우수 B : 양호	 2 1
	10)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 최우수 B : 우수	 1 0.5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1)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2	A. 평균환산재해율 0.25배이하 B. 평균환산재해율 0.40배이하 C. 평균환산재해율 0.55배이하 D. 평균환산재해율 0.70배이하 E. 평균환산재해율 0.85배이하 F. 평균환산재해율 1.0배이하 G. 평균환산재해율 1.0배초과	+2.0 +1.7 +1.3 +1.0 +0.7 +0.3 0.0
	1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B.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1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0.2/건
	14) 최근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이상 받은 자	−0.5 −1.0
라.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15)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1	A : 1등급 B : 2등급	1.0 0.5
	16) 친환경 건축물 인증등급	1	A : 최우수 B : 우수	1.0 0.5
	17) 녹색기술 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녹색기술 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2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공사 및 소방공사는 '※주:' 5)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2-1) 준설공사를 사전심사로 집행할 경우에는 신인도를 평가한다.
3) 합병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건설재해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4) '가'목 1)의 평가요소 중 영업정지기간 등은 소송등으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5) 최근 1년간 조달청이 실시한 공사입찰 및 계약진행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등 계약질서를 문란시켜 서면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인도 취득점수에서 1점을 감점한다.
6)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7) '가'목 2), 3)의 평가에서 동시에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에 중한 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8) '나'목 5)의 평가는 2011년부터 국토해양부장관이 조달청에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며, 2011년 이전에 통보된 자료로 평가할 경우로서 평점 90점이상(95점이상포함)인 자는 2점으로 평가한다.
9) '나'목 9) 및 10)의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9-1)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음.
9-2) PQ신청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9-3)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10) 환산재해율 및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환산재해율×0.5+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0.3+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11) '다'목 11)부터 13)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12) '라'목의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2-1)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06호(2009.12.31) 및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29호(2009.12.31))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2-2)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은「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2-3)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70호, 2012.3.30) [별지 제4호~제6호]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2-4) 사전심사신청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또는 확인 받은 내용을 [별첨양식 13] 또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70호, 2012.3.30) [별지 제4호~제6호]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12-5)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실적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3) '나'목의 하도급관련사항 심사항목의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평가는 다음과 같다.

13-1) 신청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13-2) 신청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A, B등급 중 하나의 등급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하도급자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제외)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3-3) 신청자가 13-2)에 따라 신청하여 심사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공사의 낙찰자(계약상대자, 이하 같음)로 결정된 경우에는 낙찰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53조(적격 · PQ 심사관련사항 이행)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53조 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낙찰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낙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5) 낙찰자가 13-3)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 · 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3-6)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낙찰자는 13-4)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향후 3년 내에 입찰공고되는 사전심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받은 가점 대비 미사용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의 2배를 감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감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감점산정방법(예) : 표준하도급계약을 계약금액의 30%로 사용계획서를 제출 후 사용계획서 대비 88%를 미사용 한 경우

⇒ 0.88(미사용비율)× 1점(가점)× 2(2배 감점)=1.76→△1.7점)

13-7) 13-2)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 부여 및 13-3) 내지 13-6)의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 부여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신청자)에게만 부여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을 받은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에 포함 한다.

13-8)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타 공공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하여 표준계약서 이행여부에 대한 감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자는 통보된 감점을 그대로 사전심사평가에 반영하며, 동일한 업체가 2건 이상의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반영하되, 감점의 한도는 12점으로 한다. 다만, 당해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 이외의 업종은 감점한도를 8점으로 한다.